

제 2 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제2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사례 15 2019서울조정371·372·373 정정·반론·손배청구

언론사가 실시하는 대학평가의 부적절성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저널리즘 관련 토크 프로그램에서 신청인 신문사가 매년 실시하는 대학 평가가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평가지표를 매년 바꿔 객관성이 떨어지며, 평가 결과가 발표될 무렵에 평가 참여 대학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대학 평가와 광고가 관련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신문사는 위 보도가 이뤄지기 전에 당사 대학 평가는 광고와 무관하고 평가지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 등 평가 전반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위 보도로 인해 20여 년 간 공정하게 진행해 온 대학 평가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대학평가는 참가비가 없고 광고와도 무관하게 진행됐으며, 대학 특집섹션 기사도 평가와 무관하다.
- 대학으로부터 광고 등 대가를 받고 평가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사과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대학 평가지표는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는 것이고 특정 대학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을 조정하지 않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공익적 목적의 보도이고, 대학 특집섹션에 홍보 기사가 실린 대학과 평가지표 간



높은 연관성, 평가 참여 대학의 진술 등을 참고한 진실한 보도이며, 신청인 언론사는 스스로 반론할 수 있는 매체를 갖고 있는데다 반론권을 청구할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항변했으나, 반론보도 게재에 관한 중재부의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진행자: 이번에는 해마다 나오는 언론사들의 대학 평가결과, 이 점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에 A신문사의 대학 종합 평가결과가 나왔고요. 지난달 23일에는 B신문사가 영국의 고등교육평가기관인 C사와 공동으로 아시아 대학 평가 100위를 발표했습니다.

출연자 1: 세계적인 대학 평가들이 대개는 열몇 개 정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A신문사 대학 평가의 평가 기준은 지표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33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중에 일부는 연구, 일부는 교육인데 엄청나게 많은 지표를 막 섞어서 평가를 하니깐 그 평가 지표 중에 일부 어떤 특정 대학에 유리한 걸 점수를 좀 높이고 어떤 걸 낮춘다면 충분히 의도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출연자 2: A신문사 대학 평가는 올해로 20년이 넘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표가 모두 30개 정도 되는데, 사실 해마다 조금씩 이게 조정이 됩니다. 총점은 300점 만점이고요.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학교들의 숫자인데요. 올해 평가의 경우에는 모두 57개의 대학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진행자: 객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 게 “학교가 신청을 한다.” 그럼 학교가 마음먹고 이 지표에 따라서 준비를 한 다음에 신청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자체로 객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중략]

진행자: A신문사 대학 평가팀 인터뷰를 하고 오셨다고요?

출연자 2: 첫 번째로 평가 지표를 매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변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바꾸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두 번째로 “이게 서열화가 아닌가?” 질문에 대해서는 “서열화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 측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수치화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중략]

진행자: 언론사 대학 평가가 나올 때쯤 전후로 해서 대학을 홍보하는 광고들이 많이 실린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출연자 2: B신문사의 경우 C사의 아시아 대학 평가가 나온 직후에 ‘D’라는 특집섹션을 신게 됩니다. 여기에 각 대학들이 소개 되는데요. 이 대학들이 모두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국내 20위권

내에 진입한 학교들이었습니다. A신문사 경우에도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요. 특집섹션을 통해 학교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시기가 평가결과 나오기 한 달 전쯤에 관련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27일에는 8개면에 걸쳐서 대학 홍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출연자 3: 이걸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나오네. 이제.

출연자 4: 이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출연자 2: A신문사 쪽에 “혹시 광고를 받지 않으시냐, 대학들이 좋은 성적이 나왔을 경우에 그 대학들을 상대로 광고를 받지 않으시냐?”라고 여쭙봤더니 “광고 같은 건 전혀 받지 않고 참가비 역시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있는 한 사립대와 국립대를 취재해봤더니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화면) 사립대 홍보 담당자: “A신문사와 B신문사가 대학 특집 별지에 실릴 기사형 광고를 반강제적으로 요구합니다. 수시나 정시 때마다 공문이 오고 담당자도 오는데 광고를 안낼 수가 있나요?”

다른 대학은 다 하는데 우리만 빠질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대학은 광고 한번에 2천~3천만 원 정도, 지방대도 7백~8백만 원은 내야 합니다.”[중략]

출연자 3: 언론사 대학 순위는 권력이자 상품이네요.[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 프로그램에서 A신문사의 대학평가가 광고의 영향을 받아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방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신문사는 대학평가에 참가비가 없고 광고와도 무관하게 진행되었으며, 대학평가 지표는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는 것으로 특정 대학에 유리하도록 평가지표 항목을 조정할 사례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대상 프로그램 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팝업으로 위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면 하단과 유튜브·페이스북 프로그램 채널에 게재되는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화면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사례 16 2019서울조정398/399 각 반론청구

학교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반복 해고한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라는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방송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학교의 비리 사실을 공익제보한 A교사에 대한 B학교의 파면처분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자 B학교가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다시 해고한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 2회에 걸쳐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학교는 A교사에 대한 징계는 교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재심사해 결정한 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는데도 A교사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A교사에 대한 징계는 A교사의 그간 행위를 참고해 징계양정을 재심사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이뤄졌다.

■ 조정결과

대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 일부와 신청인 학교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공익제보자’인 A교사는 구제금용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교육청을 찾았습니다.

지난 주 학교로부터 네 번째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A교사는 지난 2012년, 소속 학교의 비리 사실을 공익 제보한 뒤 학교로부터 여덟 차례나 고소·고발에 시달렸고, 해고와 복직을 세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학교의 파면 처분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받고 승소했지만, 학교는 이번엔

‘파면’이 아니라 ‘해임’으로 다시 A교사를 해고한 겁니다.

재단 측이 내린 징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번번이 취소되고 있어 결국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사는 <저녁 뉴스> 및 <정오 뉴스>에서 “2012년 B학교의 사학비리를 폭로했던 A교사를 ‘파면’한 학교의 처분을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판단하자 학교가 다시 ‘해임’으로 A교사를 징계한 것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학교는 “A교사의 ‘파면취소’ 처분과 관련해 교원정치활동으로 인한 교원노조법 위반 등 여섯 가지의 징계사유를 참고해 징계양정을 재심사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A교사의 근무성적, 반성이나 개전의 정, 생활태도 등을 근거로 ‘해임’을 결정한 것이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위 보도문을 <저녁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 보도문 제목을 아래자막으로 표시하고, 자막의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대상 프로그램 다시보기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들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사례 17 2019서울조정497·498·499, 2019서울조정500·501·502(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 취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신청인 측 반론을 보충적으로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C공사가 노조파괴 전문인 D노무법인 노사혁신팀장 출신 B노무사에게 법률대리를 맡겼고, A노무법인은 D노무법인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B노무사 등 3명이 D노무법인 폐업 직후 설립한 곳이라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노무법인은 D노무법인과 관련없는데도 ‘D노무법인 후신’으로 표현하면서 기사 제목에서 ‘노조파괴법인’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B노무사는 D노무법인에서 보직을 맡은 사실이 없고 A노무법인을 설립한 주체도 아닌데도 A노무법인 명칭과 B노무사의 성씨를 공개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저하됐다고 관련 내용의 삭제 요청과 함께 정정 및 반론보도,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B노무사는 D노무법인에서 노사혁신팀장을 지내지 않았고 A노무법인은 D노무법인의 후신이 아니다.
- A노무법인과 B노무사는 노조파괴 업무를 하지 않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D노무법인에서의 B노무사의 직책은 수정할 수 있으나 취재 당시 B노무사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했는데 거부했고 ‘A노무법인이 노조파괴법인’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표현 일부를 수정하고 신청인들의 반론을 보충할 것을 제안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C공사가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D출신 노무사에게 법률대리를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노무사는 전날인 10일 밤 사임했으나, 노조는 올 들어 심해진 노조탄압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그간 계약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C공사노조와 C공사에 따르면 C공사는 노동자가 낸 부당징계와 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소송에서 법률대리인으로 B노무사를 지정했다. B노무사는 D노무법인에서 노사혁신팀장을 지낸 인물로 현재 A노무법인 소속이다.

D노무법인은 14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168개 기업을 컨설팅한 노무법인으로, 지난 2012년 10월 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A노무법인은 D노무법인의 후신으로 불린다. D노무법인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B노무사 등 3명이 폐업 직후 A노무법인을 설립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기사수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노무법인 명칭과 노무사 성씨 부분을 각 A노무법인, B노무사로 수정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A노무법인은 D노무법인의 후신으로 불린다. D노무법인에서 주요보직을 맡았던 B노무사 등 3명이 폐업 직후 ‘A노무법인’을 설립했다.” 부분을 “A노무법인은 D노무법인에서 근무하던 노무사 중 3인이 소속되어 있다.”로 수정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B노무사는 D노무법인에서 노사혁신팀장을 지낸 인물로, 현재 노무법인 ‘A’ 소속이다.”를 “B노무사는 D노무법인에서 노사혁신팀에 소속되어 있었고 현재 A노무법인 소속이다.”로 수정한다.

보도내용

본지는 “노조파괴 법인, C공사 대리한다니”라는 제목으로 A노무법인과 B노무사에 대해 보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노무법인은 D노무법인의 후신이 아닌 별도 신설 법인이며 C공사의 노조 파괴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 3번째 칸 이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사례 18 2019서울조정581·582·583 정정·반론·손배청구

양 당사자가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정부출연기관인 C연구소에 전임 소장의 비위 행위에 관한 공익 신고로 불이익을 받았던 기관장 운전원이 새로운 A소장이 부임한 후에도 노조지부장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대리운전 기사가 기관장 차량을 대신 운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이 C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한 이후 운전원 B씨에게 기관장 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게 했고, B씨를 노조지부장이라는 이유로 기관장 차량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운전원 B씨는 C소장 취임 이후 다시 기관장 차량운전 업무로 복귀했고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 신청인은 B씨가 노조지부장임을 밝힌 이후에도 기관장 차량운전 업무를 계속하게 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운전원 B씨는 연구소 규정상 시간외 수당 수급대상자가 아니므로 표준근로시간을 벗어난 운행이 잦은 기관장 차량운전 업무를 강요할 수 없어, 기관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A소장이 직접 운전하거나 불가피하게 대리운전 기사를 활용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취재 당시 신청인이 운전원 B씨 대신 대리 기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B씨가 노조지부장이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기에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리 결과, 조정대상기사에 신청인의 반론이 미흡하다는 중재부의 권고에 따라 양 당사자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게재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재부가 반론보도문 게재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문재인 캠프 출신 A소장은 자신이 타는 관용차 운전을 직원이 아닌 외부 대리기사에게 맡겼다. 기존 기사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리기사를 이용하니 국민 세금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셈이다.[중략]

또한 A소장은 B씨를 업무에서 ‘배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운전원인 B씨에게 소장 관용차가 아닌 업무용 차량 운전을 맡겼다는 것. 하지만 B씨는 이에 대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한 것도 한두 차례에 불과하다고 다시 반박했다.[중략]

B씨의 업무배제는 부당노동행위, 세금 낭비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 말한 대로 그는 공익신고자다. A소장은 그의 노조 지부장 자격을 문제 삼지만, B씨에게 노조는 공익신고자 불이익 침해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결국 A소장은 ‘갑질’ 논란은 물론이고,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을 수 있다.[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이전 정권에서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았던 C연구소 기관장 운전원이 새로운 소장이 부임한 이후에도 업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C연구소 측은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이 없고,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조지부장이 기관장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해당 운전원이 수당 문제로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있어 출퇴근시간 위주로 대리기사를 사용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위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초기화면 상단에 게시하도록 하고 48시간 이후에도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위 보도문 중 ‘이에 대해’ 이후 부분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검색되도록 한다.
-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아래 부제목 형식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C연구소측, “노동관계법에 따른 조치였을 뿐 공익신고자에 불이익 준 것 아냐”]



사례 19 2019경기조정90/91 각 정정청구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비판 수인한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정정보도보다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시교육청이 특수분야 장학사를 필요 이상으로 선발해 대기발령한 뒤 채용목적과 다른 분야 업무에 발령했고, 전교조 출신 장학사를 선발하기 위해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면접 비중을 늘렸으며 ‘정책국’을 신설해 현 교육감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집중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교육청은 각종 법규에 따라 인사정책 및 조직개편 등을 실시하고 교육감의 권한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인데도 “갑질”, “주민소환”, “제2의 최순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위 보도로 인해 교육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장학사는 선발 후 6개월~1년 6개월 정도 대기발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장학사 선발 시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특수 장학사 선발을 확대하고 있다.
- ‘정책국’은 교육부 규정에 따라 신설한 것으로 교육감을 보필하기 위한 부서가 아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들은 인사정책 및 조직개편 경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 교육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신청인 교육청은 비판 수인한도가 큰 기관이므로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정정보도보다 구체적인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제안, 이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보도 1

A시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인사로 인해 본청 교육 행정 관계자들의 불만이 한창 고조되고 있다.

이들의 불만 대상인 시 교육청의 터무니없는 인사로는 보직 없는 특수 분야 장학사를 대책 없이 뽑아 놓고 이렇게 1년여 방치(?)됐던 교사를 B교육감이 들어서자 바로 비특수분야의 일반 장학사 업무에 발령, 이번 인사에 대해 교육감의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중략]

지난 2015년 전임 교육감은 당시에 전교조 출신의 장학사 선발을 위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등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축소한 장학사 선발'이란 지적과 '이미 내정된 장학사 선발'이란 추문이 난립하는 가운데 7개 분야에서 특수 분야 장학사 선발을 강행했다.[중략]

그러나 문제는 이들 장학사가 아니라 2017년 특수 분야 장학사로 선발된 인력이 1년을 미발령됐다가 지난해 9월 1일자로 특수 분야가 아닌 비분야에서 일반 장학사로 발령돼 근무한다는 사실이 특수분야 장학사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사실이다.[후략]

보도 2

[전략] A시교육청은 올해 시 교육청 조직을 기존 2국에서 '정책국'을 새로 확대 편성해 3국 2담당관으로 변경했다.[중략]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는 "이번에 교육 복지 기능과 교육정책 연구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한다는 주장은 말뿐이다."라며 "이번 조직 확대는 주장과는 달리 교육국의 중요 기능을 가져 오고 행정국의 조합 관련 기능을 가져와 관리가 편리한 정책국을 신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편성된 정책국의 주요 업무나 보직에는 대부분 교육감의 (개인 관련) 조직이 자리하고 있다."며 "현재 교육청의 조직은 개인 입맛에 맞는 권력 집중형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중략]

지난 3월 1일자로 신설된 '정책국'에는 전임 교육감이 도입한 8개 분야의 특수분야 장학사 선발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선발된 장학사 15명 가운데 7명의 장학사가 집중 편성돼 있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기사 1, 2에서 A시교육청이 특수분야 장학사를 대책없이 뽑아 1년여 동안



대기시킨 뒤 비특수분야의 일반장학사 업무에 발령하고, 전교조 출신 장학사를 선발하기 위해 서류심사 및 필기시험 등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면접 비중을 늘렸으며, 신설한 '정책국'에 현 교육감의 코드에 맞는 파견교사를 집중 배치해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시교육청은, 장학사는 A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 역시 교육청 수급에 따라 보통 6개월~1년 6개월가량 대기 발령을 거친 뒤 결원 발생 시 총원하고 있고, 장학사의 부서 배치는 교육감의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것이며, 장학사의 정책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량평가 대신 면접평가의 비중을 늘리고 특수분야 장학사를 확대 선발하는 것이 추세로서, 특정 단체 소속 인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책국'을 신설한 것은 2018. 2. 교육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거쳐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A6면에 위 보도문을 2단에 걸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 제목활자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사례 20 2019대전조정32 반론청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피신청인 기관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후속보도 형태로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A부처는 부처가 발간하는 월간지에서 2019년도 부처 업무계획을 전하면서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의 수당을 대폭(107%) 인상한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단체는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가 모인 단체로, 약 50만 명의 유공자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도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 수당을 대폭(107%) 인상했다고 보도해 사실관계가 호도됐다고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의 수당은 124,000원에서 257,000원으로 인상된 것이고, 전년 대비 3.5% 인상된 6·25전몰군경 승계유자녀 수당인 109만 원과 비교하면 23.5% 수준에 불과하다.
- 신청인 단체는 향후에도 A부처에서 신규승계자녀의 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은 사실과 다르지 않고 지난 발행 잡지에서 이미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 수당액수를 보도한 사실이 있다고 항변했으나, 중재부는 유의미한 정보 전달을 위해 구체적인 액수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피신청인 부처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후속보도 형식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 양 당사자가 이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A부처는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내용.[중략]

저소득자 등 보훈가족의 여건을 고려해 보상 수준을 인상해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의 수당을 대폭(107%) 인상하고 생계 곤란 보훈가족의 생활조정수당을 5만 원 증액하고 대상을 확대한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조정대상기사에서 A부처의 2019년 업무보고 내용 중 “6·25 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을 대폭(107%) 인상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승계유자녀들이 받게 된 실제 수당 액수는 124,000원에서 257,000원으로 인상됐음을 알려드립니다.

A부처는 향후에도 국가보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도방법

-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최초 발행되는 잡지 3면에 위 보도문을 박스 기사로 게재하되, 조정대상 기사 본문의 글씨크기 및 글씨체로 한다.
- 위 잡지가 발행된 후 지체없이 위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정책면에도 게재하되, 제목을 ‘신규승계유자녀수당 107% 인상 : 124,000원에서 257,000원으로’로, 본문의 글씨크기 및 글씨체는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글씨크기 및 글씨체로 하여 최초 게재시점으로부터 72시간 동안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72시간이 지난 후에는 DB에 저장해 검색·제시되도록 한다.

사례 21 2019부산조정32 정정청구

의혹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도한 데 비해 당사자의 해명은 형식적으로 반영해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시유도회 현 회장과 집행부가 비리와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공식 직책이 없는 관계자들이 행정에 관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고,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관장들을 조사하고 징계 감면 등을 미끼로 발전기금을 내도록 했으며, 회장의 개인소송에 유도회 공금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유도회는 모든 행정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했고 위력을 행사하거나 발전기금을 내도록 한 적이 없으며, 개인소송에 유도회 공금을 사용한 것은 임원들의 공무로 인한 개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사실확인 없이 일방적인 의혹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매트 반납 공문은 B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거친 것이다.
- B씨가 비리를 폭로한 사람들에게 대한 보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거나 발전기금 납부에 관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다.
- 이사회가 유도회 공적업무로 인한 개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건을 승인한 데 따라 현 회장의 소송비용을 유도회 공금으로 집행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는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주장을 보도했을 뿐이고 며칠 뒤 열린 신청인 유도회의 기자회견 내용도 보도했기에 신청인의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 유도회가 피고발인 신분이고 보도 중 신청인 유도회에 관한 의혹 부분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데 반해 신청인의 해명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반론보도 게재를 권고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시 유도 관련 지도자, 학생, 학부모 일동’ 40여 명은 A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시유도회 회장과 집행부의 직권남용과 비리, 갑질 횡포에 대한 검찰 고발과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중략]

이들이 공개한 자료와 주장에 따르면 A시유도회에서 통칭 ‘전무이사’라고 불리는 B씨가 사무장을 통해 부산아시아안게임대회 후 지원 매트 반납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를 내리는 등 전권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어 현 회장의 최측근인 A씨는 A시유도회 이사회에서 전무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대한유도회에서는 다른 비리사건에 계류 중인자로서 유도회가 상정한 안건을 승인해주지 않아 아무런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사회에 참가하고 공문을 보내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A시유도회 보직까지 겸임하는 B씨가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체육관 관장 7명에게 2년간 자격 정지를 내린다고 위협하고 발전기금 300만 원 내면 집행유예 2년으로 해주겠다고 얘기를 흘려 해당 관장들이 괜한 분란을 만들면 손해라고 생각해 발전기금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보 조정대상기사에서 A시유도회 현 회장과 집행부가 비리와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그 사례로 공식 직책이 없는 관계자들이 행정에 관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고,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관장들을 조사하고 징계 감면 등을 해 준다고 얘기를 흘려 발전기금을 내도록 했으며, 회장의 개인소송에 유도회 공금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청유도팀 소속 선수는 검직금지 등으로 코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감독의 동의하에 A시의 모 대학교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학부모들에게 100만 원 상당을 급여로 받아 왔다는 주장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시유도회는 모든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공식 직책이 없는 관계자가 공문 발송 등에 관여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보복차원에서 행동하거나 징계 감면 등을 이야기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송에 유도회 비용을 사용한 것은 유도회 임원들이 공무로 인해 개인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청유도팀 감독과 해당 선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가 모교 후배들과 합동 훈련을 하고 그 과정에서 후배들에게 기능과 기술을 가르친 바 있으나 감독의 동의나 묵인 하에 코치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 섹션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기사목록 첫 페이지 상단에 나타내도록 한다. 단,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각각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위 보도문을 지역 섹션과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 22 2019서울조정1385 · 1386, 2019서울조정1387 · 1388(병합) 각 정정 · 반론청구

정부 정책에 관한 공공연한 의혹 또는 소문을 다룬 보도에 대해 정정이 아닌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정부가 2019년 대북 식량지원을 보내기로 한 쌀은 2017년 정부의 대량 매입 분으로, 정부의 대량 시장격리로 인해 2017년 쌀값이 폭등하는 원인이 됐고, 시장격리 당시 대북지원용이라는 야권의 의혹에 대해 정부가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공교롭게 2019년 대북 식량지원에 2017년산 쌀이 활용되어 정부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라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부처는 2017년 쌀 시장격리 당시 국회에서 대북지원용이라는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없고 대북지원계획과 무관하게 쌀 시장가격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최근 3년간 이뤄진 해외원조에도 통상 비축 2년차 물량을 활용해왔기에 2017년 쌀 시장격리와 이번 대북식량지원은 무관하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정부의 2017년 쌀 시장격리 당시 국회에서 대북 식량 지원용이라는 의혹은 공식 제기된 바 없음
-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발표 당시 2017년산 쌀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최근 이루어진 해외원조에도 보관 2년차 물량을 활용해옴
- 2017년 쌀값은 1996년 수준보다 하락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는 불가피했음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2017년 당시 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발언 사실이 속기록에 남아 있다며 진실한 보도라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공연한 소문에 관한 보도이고 쌀 시장격리와 대북지원

간 무관함을 알리는 것이 신청인의 핵심 주장이므로 이에 관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을 권고, 양 당사자가 이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따라 북한으로 보내기로 한 쌀 5만t은 2017년 수확한 것이다. 정부는 그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쌀을 시장에서 사들였고 이는 쌀값이 폭등하는 원인이 됐다.[중략]

정부가 2017년산 쌀을 대량 매입했을 때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대북 지원을 염두에 두고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쌀 가격이 사상 최고인 19만 원대를 기록하자 인터넷과 SNS 등에는 “정부가 북한에 쌀을 몰래 보내 창고에 공공비축미가 남아있지 않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돌았다.

그때마다 정부는 “정부가 쌀을 매입한 건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이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에 보내기로 한 쌀이 공공롭게도 대량 매입으로 가격 폭등의 단초가 된 2017년산이라는 게 알려지며 정부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2017년 쌀 가격폭등의 단초가 된 정부의 쌀 대량매입과 올해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관하여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부 보유 양곡의 수급, 비축미의 품위 등을 고려하여 2017년산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이루어진 해외원조에도 보관 2년차 물량을 활용해왔으며 2017년 쌀 시장격리와 이번 대북식량지원은 무관함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유통된 쌀값은 과거 20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장격리를 추진하였으며, 정부의 시장격리, 쌀 생산량 감소, 농가의 출하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쌀값이 상승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지면 <경제>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경제>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기하고 그 제목을 선택하면 보도문 본문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최초 48시간 동안 위 보도문 제목이 해당면 기사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사례 23 2019서울조정1785 · 1786 정정 · 손해청구

성명서의 진의를 다르게 보도한 것은 의견표명을 넘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는 중재부의 판단에 근거해 상세한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지역에서 열린 ‘반일 종족주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A대학교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과장됐다고 발언해 시민단체가 강한 비판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대학 동문회도 입장이 둘로 갈려 총동문회가 해당 교수의 발언을 친일 행위로 규정한 데 반해 C동문회는 출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C동문회는 성명서 및 담당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명서의 목적은 해당 교수의 발언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교에서 자신과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자를 공격하는 전체주의적 마녀사냥을 지양하자는 취지였음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해당 교수의 발언을 반대하는 동문의 인터뷰와 상반되는 입장이라며 C동문회의 인터뷰를 삽입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조정대상보도의 A대학 C동문회는 해당 교수의 발언에 찬성 또는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학자의 견해를 학문적 토론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고, 학자 양심을 보장하고 마녀사냥을 지양하자는 C동문회의 진의가 왜곡됐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반일 종족주의’에 관한 논쟁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해당 교수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한 것으로, 신청인 동문회의 입장에 대해 ‘지지’라고 표현한 것은 피신청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하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 동문회의 의견표명을 과장되게 왜곡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신청인이 제안한 반론보도문 내용을 신청인이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지역 시민단체가 A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대학 특정 교수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19일 A시에서 진행된 ‘반일 종족주의’ 출판 기념회.

이 자리에 참석한 해당 대학 소속 교수 두 명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중략]

동문회도 입장이 둘로 갈렸습니다. 학과 총동문회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수의 발언은 친일 행위라며, 즉시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B / A대학 해당 학과 총동문회 회장

“책에 대한 반론이나 잘못된 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체계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책 팔이’에 나섰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것입니다.”

반면 교수의 발언에 찬성 의사를 밝힌 해당 대학의 C동문회는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해당 교수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D / A대 C동문회 사무총장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면 열린 토론이나 학문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지 언어폭력이나 인격 비하로 대처하는 것은 대학에서는 바람직하지가 않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A지역 9시 뉴스를 통해 방송된 <대학교수 발언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A대학교 C동문회 측은 해당 교수 발언에 찬성 또는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학자의 견해를 학문적 토론을 통해 검증해야 하는 등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조정대상 프로그램 방송 중에 위 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의 진행 속도로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 보도문의 제목을 통상의 자막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한다. 단, 멘트 중 배경화면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조정대상 프로그램 인터넷 홈페이지 내 A지역 뉴스 페이지 초기화면에 위 보도영상 및 위 보도문을 통상의 방식대로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이후 A지역 뉴스 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사례 24 2019서울조정1856 · 1857 정정 · 손해청구

장기 미제사건의 부실수사를 비판한 보도에서 국과수 감식결과에 관한 양 당사자 간 해석차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장기 미제 살인사건에 관해 방송하면서 유력한 용의자 A목수가 있음에도 경찰이 알리바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했고 현재까지도 수사 의지가 없으며,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B씨의 신발과 현장에서 발견된 족흔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당시 해당 사건 수사관 또는 미제사건수사팀 담당 수사관인 신청인들은 위 보도는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찾기보다 신빙성이 결여된 제보자의 진술과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A목수 및 과거 담당 형사들인 신청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 신청인들이 부실수사를 했고 현재까지도 수사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정정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A목수는 범죄 혐의가 없다.
- 담당 경찰관들은 다양한 수사를 진행해 유력 용의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미제사건으로 남았고, 국과수 감정 결과 B씨의 족적과 현장에서 발견된 족흔적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A씨의 알리바이 존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데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족흔적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B씨의 족적과 현장 족흔적이 '유사'하다고 기재돼 있을 뿐 '일치'한다는 기재는 없으며, 신청인들의 인터뷰를 고의로 편집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리 결과, 용의자 B씨의 족흔적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를 해석하는 데 양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지가 있는 점,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반론보도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 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인적사항과 알리바이가 적혀 있는 다른 인부들과 달리 공백이 많은 30대 A목수입니다. 사건 발생 전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A씨, 저녁 6시 10분 경부터 A목수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이가 아무도 없다는 애긴 겁니다.[중략]

그가 공사장 인부들 중에 유일하게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고 다른 인부들과 달리 범행과 손목유기까지의 35시간 동안 알리바이를 검증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중략]

[제보자] “화장실 쪽 어디예요?”하고 존댓말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인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같이 좀 가달라고, 며칠 전에 봤던 공사장 아저씨”[중략]

확실한 물증처럼 거론됐던 족적은 국과수 감식결과 일치하지 않은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중략]

[신청인 C] “긷는 거야, (사건이) 안풀리니까 긷는 거고요, 그런데 왜 (취재를)하러 다니세요, 몇 년 전에 다 태웠어요, 수사 안한다고 그래서 다 태웠어요.”[중략]

[신청인 D] “하아, 또 그것이 알고 싶다? 모든 사람이 잊고 편안하게 사는데 아픔을 다시 또 상기시키는 그런 일이 된다고요.”[중략]

[신청인 E] “심부름만 하던 때라니까요 그때는. 복사 한 1년 해야 돼요. 일단 저는 기억이 없어요.”[중략]

[신청인 F] “1월에 와서 기록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사건을 저희가 검토도 못한 상태거든요.”[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 프로그램에서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용의자 B씨 외 다른 용의자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국과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유력한 용의자 B씨의 신발과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방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들은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유력한 용의자 B씨를 특정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으나 직접증거 부족으로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었고, 현재 미제사건수사팀에서 의지를 갖고 계속 수사 중이며, 국과수 감정 결과 족적은 불일치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조정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이 결정이 확정된 날 이후 도래하는 최초 2개 정규회차 방송일 중 택일하여 해당일 방송 말미에 위 보도문을 표시하되,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활자체 및 크기로 화면 중앙에 최소 7초 간 계속해서 표시하며 배경화면은 보도문 활자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계열의 단색화면으로 한다.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보도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25 2019대구조정80·81 정정·손배청구

신청인과 소송 중인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관피아’라고 표현한 데 대해 반론보도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제보 업체의 진술에 근거해 A공사 간부 출신이 대표인 B업체가 시공 능력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불법인 재하도급을 자행하고 있고, 10여 년 간 A공사의 휴게소 오수처리장 설치 공사를 싹쓸이식 하청을 받고 있어 연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시공 업체에게 공사비 지급도 미루고 있어 ‘관피아 존재’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B업체는 연 평균 매출액이 20여억 원에 이를 뿐 A공사로부터 연 100억 원의 하도급을 수주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A공사의 입찰에 참여해 탈락한 경우도 많았으며 A공사의 비호를 받거나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당사와 공사비 지급건으로 소송 중인 업체의 일방적인 제보만으로 허위사실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 업체는 A공사로부터 100억 원 하도급을 수주한 사실이 없다.
- A공사로부터 비호를 받지 않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제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보도로 인한 피해에 관해 유감을 표명하는 중재부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A공사의 휴게소 오수처리장 설치 공사를 A공사 간부 출신이 만든 업체가 장기간 싹쓸이식 하청을 받아 “A공사의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씩쓸이식 하청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B업체에서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했으나 잔여 공사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 재하도급업체는 “B업체가 시공할 능력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불법인 재하도급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받을 공사금액을 확인조차 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3년이 지나자 상법상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업체는 이렇게 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잔여공사비가 10억 원 정도 된다고 말하고 “A공사에도 관피아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B업체 대표 C씨는 A공사의 간부출신 퇴직자로서 2008년 회사를 설립해 A공사의 휴게소 우수처리장 설치 공사의 대부분을 수주하면서 한때는 연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B업체가 A공사에서 하도급을 수주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A공사에서 발주해 입찰한 우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 연 100억 하도급을 입찰하여 낙찰을 받아본 사실이 없으며, A공사가 아닌 이외 업체들로부터 설립 이후 연평균 22억 7,300만 원의 하도급을 수주했으며 A공사에서 뒷선이 비호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 또한 B업체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며 A공사와는 아무런 직접거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사는 “2008년 A공사에서 명예퇴직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11년 동안 B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A공사로부터 퇴직 후 어떠한 특별한 혜택도 받아본 사실이 없으며, 우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환경전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며 현재 기사를 제보한 업체는 B사와 소송 중에 있는 업체로 제보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본보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B업체의 대표에 대해 ‘관피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A공사와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위 보도문 제목을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종합 섹션 내 주요기사 코너(3번째 이내)에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과 본문이 나타나게 한다. 24시간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이어서 게재한다.

사례 26 2019서울조정2195/2196 각 정정청구

기관의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하고 제목 및 본문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부적절한 외유성 연수로 논란이 됐던 지역 군의회 사례를 언급하면서 A시 교육청이 주관한 혁신학교 교사들의 국외연수 일정이 주로 관광명소 방문으로 채워져 있고 교육기관을 방문한 시간은 5박 7일 일정 중 9시간에 불과했다고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교육청은 국외연수 도착 첫날이 일요일이라 공식 일정을 수행할 수 없어 자비로 관광명소를 방문했던 것이고, 이동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4일 정도에 불과한 짧은 일정 중에 오타와교육청 및 8개 학교 등을 방문하는 데 17시간 이상 소요됐는데도 왜곡·과장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나이가가라 현장탐방은 국외연수 도착 첫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기관 방문이 어려워 자비로 진행된 활동이었고, 문제의 지역 군의회의 외유성 출장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 실제 4일 정도의 짧은 연수 기간 동안 공식 일정에 소요된 시간은 17시간 이상으로 국외연수 취지에 맞게 진행됐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위 보도는 부실한 연수일정 편성에도 불구하고 사전방지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보도로서, 해당 연수 프로그램을 '외유성' 연수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기관 방문시간은 지엽적인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반론보도 및 기사수정에 관한 중재부의 권유를 바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는 것과 함께, 다시보기 영상 삭제, 기사 제목 수정 및 군의회 관련 내용 삭제 등 다양한 이행사항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얼마 전 A시 교육청 장학사와 혁신학교 교사 20명은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캐나다 공교육의 성공사례를 보고 혁신학교 정책을 성찰한다며 예산 8,000만 원을 썼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고 5박 7일 동안 학교 등 교육기관 방문은 통틀어 9시간뿐이었습니다.

토론토 시청과 같은 관광명소는 꼬박꼬박 들렀는데 정작 보고서 말미엔 일정이 너무 많았다고 적혀 있습니다.[중략]

공무로 연수를 갈 때 관광은 하지 못하도록 출국 전 심사제도가 있지만 A시 교육청은 올해 심사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위 보도 관련, A시 교육청은 “나이아가라 현장탐방은 국외연수 도착 첫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기관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개인 자비부담 활동이었다. 현지에서 시차, 공휴일 및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4일 정도의 짧은 연수 기간 동안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 등 8개 기관 방문 및 공식토론에 소요된 시간은 17시간 이상 진행되어 국제교류 국외연수 취지에 맞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제목을 “해외연수 논란… 국외연수 지침 필요”로 수정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중 지역 군의회 사례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

사례 27 2019서울조정2460·2461 정정·손배청구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노조의 기자회견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에 대해 회사 측의 입장을 반론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호텔에서 해고된 B 전 노조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하면서 신청인 호텔이 친 사측 성향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해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단체협약을 폐기하는 등 고위직인 사돈과의 관계를 이용해 노동탄압을 일삼았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호텔은 복수노조가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을 뿐 신청인 호텔이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지 않았으며,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전보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사돈인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 선고됐는데도 특정 인사와 사돈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노조 측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와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노동법 개정에 따라 복수노조가 허용돼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 복수노조가 설립됐을 뿐 회사가 노조 설립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교섭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 노조가 정해졌을 뿐이다.
- 신청인 호텔은 전 대법원장과 무관하고, 노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대법원 판결은 해당 대법원장 퇴임 후에 선고됐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노조 측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도 반론보도를 게재할 의사를 표명했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을 수정하고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호텔노조 B 전 위원장이 호텔에서 해고된 지 1150일째. 시민사회가 A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A호텔은 2011년 초 임신 중인 노조 간부의 강제전보를 시작으로 친사측 성향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 노조 교섭권 박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체협약 폐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탄압에 나섰다.

또한 사측은 2015년 1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노조 활동을 주도한 B 전 위원장을 상대로 강제 전보, 임금 삭감, 사무실 출입 제한, 직원 식당 이용 금지 등 조치를 했다. 이후 A호텔은 2016년 4월 B 전 위원장을 해고하기에 이른다. 현재 B 전 위원장은 1150일째 길거리에서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A호텔은 사법농단 사업장이기도 하다. 사법농단을 주도한 C인사는 A호텔 D 회장의 사돈이다. 노조는 D 회장이 사돈 관계를 이용해 노동 탄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지난해 9월 부당 전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기에 복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B 전 A호텔 노조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호텔에서는 “복수노조 설립은 노조 관련 노동법 개정에 맞추어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회사가 개입한 적이 없으며, B 전 노조위원장 부당해고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선고되어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위 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을 “노조, “A호텔 회장, 사돈인 C 인사 힘으로 노동 탄압”으로 수정하고,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전송한다.

사례 28 2019광주조정84·85 정정·손배청구

지역아동센터의 비위행위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전문을 보도한 데 대해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반론을 상세히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B시 지역아동센터의 비위행위를 규탄하는 A시민단체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발생하는 파행 운영은 설치자와 시설장을 일치시켜야 하는 개인신고 시설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시설들의 반발로 당국이 이를 2년을 유예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매매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B시 지역아동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의 연합단체로서,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모든 센터에서 발생한 것처럼 일반화해 명예가 훼손됐고, 설치자와 시설장을 일치하도록 한 지침은 필요 사항이 아닌데도 불법집단으로 매도됐다며 정정보도 및 3억1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소관 부처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및 개인 신고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부정확한 자료에 기반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A단체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조정대상기사는 A시민단체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신청인 단체의 반론을 게재하겠다고 밝혀, 신청인 단체가 이를 수용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지역아동센터 비리에 대한 A단체 입장문 [전문]

[전략] 지역아동센터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횡령과 파행적 운영의 문제가 일부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중략]

지역아동센터의 근본적인 문제는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장이 일치해야 하는 개인신고 시설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있다고 본다. 시설장 변경 허가는 가족경영, 부적절한 시설장 임용, 사고파는 행위 등의 비위가 일어나는 원인이다.[중략]

우리는 B시에 다음을 요구한다.

B시는 개인 신고시설의 대표와 시설장을 일치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까지 대표자(설치자)와 시설장 일치명 명했다.

그러나 시설들의 반발로 2년 유예기간을 두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시설장 변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시설 매매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이에 B시는 개인 신고 시설장 변경을 불허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매매 가능성에 대해 방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A시민단체의 입장문 전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시 지역아동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연합단체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① 우선 지난 해 모 방송에서 문제제기를 한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문제 시설들은 2019년 10월 말경 자진 폐업 신고하여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B시 지역아동센터 단체 소속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보도를 계기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아동 돌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② 시설장 변경 허가는 지역아동센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자격 및 경력 등으로 자격요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시설장 변경으로 인해 아동 돌봄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은 없으며, 시설 대표자가 시설장을 고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③ 현행 법령상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 유고시 등 대표자가 변경되어야 할 경우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 소정의 기준을 준수하고 신규시설로 신고하면 기존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종사자의 근로여건 보장과 아동 돌봄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아동 돌봄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정해진 것으로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④ 보건복지부의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개정사항 중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장 일치”의 의미는 ‘납세의무자, 통장 명의 등이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주체가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보조금 등의 수령을 위한 금융계좌의 개설 및 고용주로서의 의무이행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A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시설 매매’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⑤ B시 지역아동센터 단체는 2019년 6월부터 B형 돌봄 모델을 제시하고자 B시 및 관련 기관들과 매월 1회씩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인권면 위에서 2번째 기사로 위 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또한,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위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